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사 이 버 안 보 업 무 규 정 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국가정보원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와,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「국가정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,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 (안 제3조)
- 나.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다.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’의 범위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 (안 제7조)
- 라.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, 안전성확인, 실태평가, 보안관제,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 (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제정안 전문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2. 16. ~ 12. 18.)

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 업무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이버공격 및 위협”이라 함은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서비스방해,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·정보통신망·정보저장영역을 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·절취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.
2. “사이버안보 업무”란 사이버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국가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.

가. 국가정보원법(이하 법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
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·
작성·배포 업무(이하 “사이버정보 업무”라 한다)

나.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목의 기관(이하 “중앙행정기관 등”이라
한다) 대상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(이하
“사이버공격 예방·대응 업무”라 한다)

제3조(업무 수행의 원칙 등) ①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정보 업무를 수행
할 때 중앙행정기관 등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
있거나 해당 기관의 명시적인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
하고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 시도나 관련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를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공격 예방·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행정
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
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
제2장 사이버정보 업무의 수행

제5조(기관간 협력체계 구축)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및 외국 정보·보안기관과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)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정보 업무의 수행을 통해 수집한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원활히 배포·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명칭, 활용 대상 및 범위, 이용 기관의 활용규칙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장 사이버공격 예방·대응 업무의 수행

제7조(사이버 공격 예방·대응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4조 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중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
가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나. 「방송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다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라.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
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제8조(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·대응 업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특성·중요도 및 보안 수준 등에 적합한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관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의 예방·대응에 관한 세부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9조(안전성 확인)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‘안전성 확인’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(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.)에 대한 보안성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
2. 암호장치, 정보보호시스템,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(이하 “IT보안제품”이라 한다) 및 암호모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도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의 수립
3. 중앙행정기관 등이 도입 또는 운영하는 IT보안제품 및 암호모듈이 제2호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기술시험을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활용 목적상 국가정보원의 직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암호장치 등 IT보안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)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및 자격요건(이하 “직무역량”이라 한다)을 갖추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공사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1조(훈련)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

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비한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의 범위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진단·점검)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관할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·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진단·점검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진단·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
 2.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·평가
 3.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컨설팅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진단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실태 평가)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평가의 항목·절차·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실태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안 관제)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·대응(이하 “보안관제”라 한다)하는 업무를 해당기관 또는 관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시설·장비 및 전담인력을 갖춘 조직(이하 “보안관제센터”라 한다)을 제2항 후단에 따른 국가보안관제 체계와 연동하여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격을 탐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관제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보안관제전문기업의 지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그 밖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연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5조(경보 발령)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과급영향,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고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며, 국가정보원장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경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보 관련 정보를 발령 전에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고 조사) ①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격 주체 규명·원인분석·피해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위해(危害)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, 그 밖에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관할

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피해기관 등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,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국익손실 최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해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7조(연구개발)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법과 이 영에 따른 사이버 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의 연구·개발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8조(전문기관의 활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,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 영에 따른 업무의 일부와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정보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이 영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
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이 영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마련 등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0조(운영규정 등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정보원	
연 락 처	(02) 557 - 0194